학술회의 참가기 동북아 국제학술회의 학술논문

신 용 철
〈문리대 교수·사학〉

본교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소는 8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1세기 동북아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요녕대학과 공동 주관하고 5명의 교수가 참가하여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이 학술회의는 본교의 조정원 부총장과 요녕대학의 풍옥중 총장이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한국·북한·몽고·러시아·일본 등 동북아 6개국의 학자가 참가한 국제학술회의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의 추세속에서 21세기 동북아시아가 세계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학자들간에 학문적인 교류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 모임이 이루어졌다.

특히 요녕성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우리나라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매우 가깝고 중요한 곳이다. 우리의 역사상 고구려와 발해가 활동하던 무대였고, 압록강건너 우리 반도와 직접 맞닿아 있는 곳으로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요녕성은 면적 14만 ㎢에 인구 4천2백만으로 면적은 남한의 약 1.4배, 인구는 우리와 비슷한 중국의 공업지대이며, 동북아지역 부여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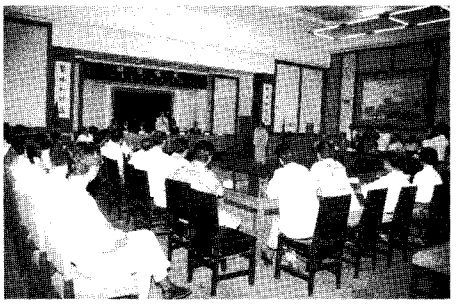

◇들판이 6개국의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학술회의의 한 장면

본교 아·태 연구소는 중국 요녕대학과 공동주관으로 '21세기 동북아 협력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를 중국 심양에서 개최했다.

신용철, 김찬규교수 등 본교 5명의 교수가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했던 이번 학술회의는 인류의 구원한 이상인 평화의 실현과 이 지역의 문화적 뇌리중건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이에 본보는 학술회의에 참석했던 신용철 교수의 참가기와 김찬규교수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속의 한·중 관계를 재조명하고 학술회의의 의의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지註〉

동북아의 학문적 교류강화 목적
풍총장 "한국을 거울 삼아야"

저명한 경제학자인 요녕대학의 풍옥중 총장은 한국에도 여러차례 다녀갔고 우리학술 잡지에 투고도 했으며, 사회주의 국가의 총장으로는 매우 정력적으로 활동하며 동북 3성 및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 몽고지역, 북한과 한국, 일본 등을 포괄하는 21세기의 거대한 경제권과 문화권을 추진 하는 것이 그의 원대한 목표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개회사에서 이 지역의 면적이 지구의 8%이며, 세계 인구의 6%를 차지하는 21세기 세계사의 중요한 경제 지구이며 동시에 문화지역임을 강조하였다.

요녕대학 고규상 부총장(역사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 학술회의는 풍옥중 총장 및 본교의 조영식 학원장 등 6명의 기조연설에 이어 총 26명의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교에서는 인류의 이상인 평화와 이 지역의 문화적 뇌리중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한 조영식 학원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하여, 법학과 김찬규 교수의 〈황해의 해저자원 개발을 위한 한·중간의 협력〉과 사학과 신용철 교수의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협력—유교문화를 중심으로—〉, 경영학과 박기안 교수의 〈한·중간의 기업제휴전략〉, 지리학과 김종규 교수의 〈대기오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무역학과 김동명 교수의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협력〉등 논문발표가 있었다.

요녕대학의 풍총장은 금년 5월28일 한국학과 및 한국연구센터를 개설하여 한국학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개학식에서 풍옥중 총장은 "한·중우호협력은 문화교류 및 인재양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금년 8월 이 연구소는 한국연구총서인 〈한국연구논총(KOREA STUDIES)〉창간호를 냈다. 풍총장은 이 논총의 권두언에서 한·중 양국은 사수가 서로 접하고 전통과 우의의 기원이 장구하다고 말하고 비은 후에 날이 맑아지듯이 두나라간 단절의 역사는 양국간의 경제·문화 교류를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중 양국은 종족·지리·역사·문화의 면에서 모두 가까운 나라로서 같은 동방의 유교문화권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의 발전을 거울로 삼아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도착한 8월 16일 저녁 초청 만찬에서 병자호란 때 강라진 선조의 후손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특별한 우의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는 또 만찬이 끝날 무렵 우리를 환영하는 시를 읊었으니 '昨飲金剛水, 今食松川魚, 錦繡三千里, 何日慶統一'로서 이는 '어제는 금강산 물을 마셨는데, 오늘은 춘천의 물고기를 먹는구나, 삼천리 금수강산, 그 어느날 통일을 경축할 것인가!'라는 뜻이다. 이것은 경제학교수로서 문화학명 등 대변혁을 거치면서 도전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실로 중국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지나간 동안 사회주의 중국의 대변혁들, 특히 문화혁명을 가리켜 중국이 겪었던 엄청난 시련이며, 전세계가 체험한 하나의 시험이었다고 스스로 평한다. 한국의 학생운동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화가 이르자 그는 웃으면서 중국 문화대혁명의 한 모습같다고 힘주어 말한다.

한편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국민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반해 사회주의는 생활을 불편하게만 만들었다고 신랄히 비판한다. 학술회의가 있던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유난히 너디자 그것이 바로 중국 사람을 닮았다고 농담하는 풍총장은 3일간의 전 세미나 기간 동안 계속 자리를 지키고 술을 마시거나 연회 등 어디에서도 함께 어울려 이야기하고 춤추는 등 엄청나게 변모하는 중국의 한 모습을 보는 듯 했다.

황해 해저자원은 한·중 공동권리
중국의 개발저지, 대륙붕 법리에 위배

김 찬 규
〈법과대 교수·법학〉

3개국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북경대학은 필지에 우리처럼 잘 가꾸어졌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무척 자연스럽게 형성된 캠퍼스가 조용하고 그윽해 보였다. 모두 중국식 건물에 연꽃이 놓이 자란 호수들이며 캠퍼스 안에 있는 이대교, 셰르반테스, 체원베 등의 동상이나, 에드가 스노우의 거념비 등이 중국현대사를 보여주는 듯하고, 미명호의 맑은 호수는 대학의 분위기를 한결 풍성하게 해주었다. 자매결연의 체결 후 식사하던 귀빈식당의 벽에는 '其味無窮'이란 현대의 저명한 화가 유해속의 93세 때의 글씨가 걸려있고, 그 옆의 학생식당에도 '鴻賓滿座'란 힘찬 글씨가 역시 서예의 중국을 느끼게 한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이 수교한 이후 우리대학은 이제 중국의 북경대학, 요녕대학, 곡부사범대학 상해의 복단대학 등 중요한 대학들과 학문적 교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한편 북경의 중·일 우호병원 및 요녕성 중의학원과 본교의 한의대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1945년 이후 47년간 단절되어 있던 역사와 문화의 연속선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중국은 물론 북한 이해와 연구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될 21세기 문명사회를 위해 우리는 이제 그의 학문적 교두보를 힘차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84호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5월 30일 대통령령 제5020호로 동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대륙붕의 개발구역으로서 7개 해저광구를 지정한 바 있거니와 이중 제1, 제3, 제4광구는 중국과 마주보는 황해에 있고 제7광구는 한·일·중 3개국이 마주 보는 동중국해에 있다.

해저광구를 지정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고 실제 획선에 있어서는 중간선보다 우리쪽으로 약간 들어 오게 선을 그었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해저광물자원에 관한 탐사에 나서자 중국측은 1973년 3월 15일,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불법적으로 외국 회사를 끌어들여 자기들의 해저자원을 탐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하고 나섰다.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 1973년 3월 16일자의 (인민일보)에 실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 전문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되여 있다.

"최근 미국 석유회사에 의해 차용된 파나마 해저석유 탐사선 '글로머4호'가 수척의 보조선박과 더불어 남조선 당국의 동의하에 황해와 동해(동중국해의 중국식 호칭—필자주)쪽에서 빈번히 탐사활동을 행하고 있다.

중국 연해해역의 해저자원은 중국 소유에 속한다. 황해와 동해에 있어서의 중국 및 그 이웃나라들의 관할권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 당국은 공공연히 일방적으로 외국 석유회사를 상습한 구역에 끌어들여 탐사활동을 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체의 권리를 유보한다."

이 성명의 요지는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나는 중국 연해 해역의 해저자원이 중국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황해 및 동중국해에 있어서의 인접국가들간의 관할권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외국회사를 끌어들여 탐사활동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근거로 그들은 "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체의 권리를 유보한다"고 함으로써 事不如意하다면 무력행사마저 불사할 듯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생각건대, 중국 연해해역의 해저자원이 그들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륙붕 '당연히 그리고 처음부터' 연안국에 속하며 그곳에 부존하는 천연자원도 대륙붕과 더불어 당연히 그리고 처음부터 연안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잊어서는 안될 사실은 똑같은 이유로 해서 한국 연안해역의 해저자원은 한국에 속한다는 점이다. 황해에서는 그 연안국인 한·중 양국인 황해의 해저자원에 대해 똑같이 권리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피차의 권리가 어디서 끝나느냐 하는 점만이다.

주지[illegible] 같이 황해의 경우에[illegible]균수심이 55m이고 가[illegible]은 곳이라도 125m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황해의 해저는 전체가 대륙붕이며 또한 한·중간의 거리는 어느 곳이나 4백해리 미만이다. 그러므로 황해에서는 피차의 대륙붕이 겹치기에 이곳에서 경계확정에 관한 문제가 일어날 뿐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획선이 국제법상 잘못된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한 중간선 원칙이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인가? 위에서 본 중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은 문제를 이러한 방향으로 풀어 나가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들은 황해이란 연안국 육지영역의 자연적 연장(UN해양법협약 제76조 1항조)이기에 당연히 연안국에 속하며, 그곳에 부존하는 천연자원도 대륙붕과 더불어 당연히 연안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륙붕의 법리에 관한 고전적 국제판례인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1969년 2월 20일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해중 및 해저에로의 육지영역의 자연적 연장을 구성하는 대륙붕구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육지에 대한 그 나라의 주권으로 해서 '당연히 그리고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해저를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도 그 연장이다. 요컨대, 여기에는 하나의 '고유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법적 행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이를 선언할 수 있긴 하나(여러 국가들이 선언을 한 바 있다) 반드시 창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대륙붕이란 연안국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기에 이란 연안국 육지영역의 자연적 연장(UN해양법협약 제76조 1항조)이기에 당연히 연안국에 속하며, 그곳에 부존하는 천연자원도 대륙붕과 더불어 당연히 그리고 처음부터 연안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륙붕의 법리에 관한 고전적 국제판례인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1969년 2월 20일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해중 및 해저에로의 육지영역의 자연적 연장을 구성하는 대륙붕구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육지에 대한 그 나라의 주권으로 해서 '당연히 그리고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해저를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도 그 연장이다. 요컨대, 여기에는 하나의 '고유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법적 행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이를 선언할 수 있긴 하나(여러 국가들이 선언을 한 바 있다) 반드시 창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대륙붕이란 연안국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기에 및 동 중국해에서 인접국가들간 관할권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외국회사를 끌어들여 탐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체의 권리를 유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인접국가들간의 관할권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연안국일지라도 해저자원의 개발에 나서지 못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정녕 대륙붕의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대륙붕의 법리란 앞서 보았듯이 그것이 연안국 영토의 연자원과 더불어 연안국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대륙붕은 '당연히 그리고 처음부터 연안국에 귀속되는 것이기에 별도의 선언이 필요치 않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대륙붕의 경우에는 인접국가들간 관할권의 범위에 대한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연안국은 자기 몫의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계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어디까지가 연안국의 대륙붕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간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이해되지 않아 필자는 로 거기서부터의 중간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능성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고자 하는 바는 네가지 가능성 중 첫째 것과 관련된 것이다.

황해의 동심선은 황해를 3등분할 때 3분의 2가 중국으로 가고 3분의 1이 한국으로 가는 위치에 있다. 이를 두고 황해의 등심선이 그렇게 된것은 황하에서 흘러나온 황토 때문이며 황해해저의 3분의 2에 중국에서 흘러나온 점토층이 쌓여 있으니 황해해저의 3분의 2는 중국의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착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앞서 누가 지적했듯이, 대륙붕이란 연안국 육지영역의 자연적 연장이기에 연안국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흘러나온 황토가 덮여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곳이 중국의 대륙붕이라고 보는 견해는 대륙붕의 법리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륙붕과 그 위에 덮여 있는 점토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사님
'눈물젖은 두만강'을 잘 부르는 신입사원

세대간에 벽을 뛰어넘는 이해와 화합으로
신세대와 기존세대가 공존하는「현대자동차」

모이사님의 요즘 18번은 신세대 애창곡.
물론 잘 부르지는 못하신다.
중요한 것은 늘 신세대를 이해하려는
그같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같은 자동차회사 사람들은 늘 나이를
먹어서는 안돼. 그랜저를 만들땐 그랜저를
타는 세대의 모든 것을, 젊은 차를 만들땐,
젊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네."
자신과 다른 세대에 대해
편견보다는 이해를 앞세우는 사람들.
현대자동차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일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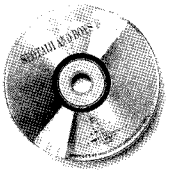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져있게 받아들이는 회사,「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